

## 변경대비표

1. 대상펀드 : 머스트 원앤온리 증권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2. 변경사유 : 환매 기준 변경 등
3. 변경 요구·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요
4. 변경등록일 : 2024 년 7 월 26 일
5. 변경 사항

|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정 전   | 정정 후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나. 환매<br>(2) 환매청구시<br>적용되는 기준가<br>격 | A. 매주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화요일 17시까지 환매 청구 시<br>: 화요일 다음 영업일(수요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부터 제1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0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<br>B. 매주 화요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본다. | A. 매월 1일부터 매월 7일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7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13 영업일(D+1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7 영업일(D+16)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(단, 매월 7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월 8일부터 당월 14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본다.)<br>B. 매월 8일부터 매월 14일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14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13 영업일(D+1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7 영업일(D+16)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. (단, 매월 14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월 15일부터 당월 21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본다.)<br>C. 매월 15일부터 매월 21일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21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13 영업일(D+1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7 영업일(D+16)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. (단, 매월 21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월 22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본다.)<br>D. 매월 22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말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13 영업일(D+12)에 공고되는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<p>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7 영업일(D+16)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. (단, 매월 말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월 1 일부터 익월 7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.)</p> |
|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 | <p>-</p> | <p>세액공제 관련 법규 개정내용 업데이트</p>   |